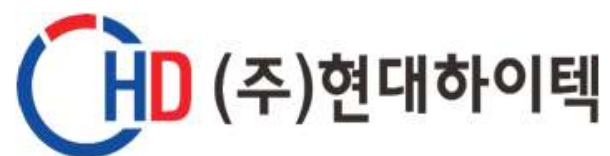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 · 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7장 위험성평가

개정 이력

차수	개정일자	개정 내용	비고
0	2009.01.01	초도 제정	
1	2014.12.01	안전보건조직도 추가 및 첨부내용 정리	
2	2015.11.30	위험성평가 개정내용 추가	
3	2016.06.13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항목 추가	
4	2017.10.13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안전검사 추가	
5	2019.02.21	무재해운동 문구 일부 수정	
6	2019.10.10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	
7	2020.07.01	위험성평가 근로자참여 항목 추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	
8	2021.01.20	산업안전보건법 연결 내용 조항 수정 및 안전검사 대상품목 개정,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	
9	2021.05.28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항목 추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	
10	2022.03.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기준 명기,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 변경 법조항 반영	
11	2022.06.30	[별표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정(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12	2022.12.29	제78조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법령(누락) 추가(3항)	
13	2023.06.29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현대하이텍(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 및 건설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및 공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 ②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2. 사업장이란 회사의 본사 사무소 및 공사 현장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보건관리 인력이란 회사의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부서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중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안전보건경영방침)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5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 ① 회사는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인력·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및 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예방 의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

-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 ② 회사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조직을 둔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공단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 (안전관리자)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3)의 요건에 해당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실무·현장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지원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관리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1조 (보건관리자)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실무·현장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보건업무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
 2.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지원
 6.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치료,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에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보건관리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2조 (산업보건의)

회사는 의사가 아닌 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의사 자격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하게 한다.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는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회사는 안전관리 운영에 노사가 참여하여 안전보건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1의 자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책임자1인.
 2. 산업보건의1인.
 3. 안전관리자(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3인 이내
 4. 근로자 대표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8인 이내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 노사협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게시판에 게시, 사보에 게재, 자체 정례조회시 집합교육 등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보완
 5.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

제14조 (회의결과 주지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장 내 게시판에 부착
2. 자체 정례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3. 그 밖의 방법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 (교육의 구분)

- ① 안전보건교육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 (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1월 중에 해당 연도의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사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의 권리와 의무)

전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법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18조 (정기교육)

- ① 회사는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분기당 사무직3시간 이상, 비사무직6시간 이상 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② 직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 ①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연간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 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20조 (채용시 교육)

- ① 회사는 일용직을 제외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채용 시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21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① 회사는 작업 내용 변경 근로자에게 변경된 작업 종사 전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은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준한다.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안전보건교육)

- ① 회사는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물질안전보건교육)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24조 (직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 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3개월 이내
 -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1년 이내)
 -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사이

제25조 (안전보건교육강사)

-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방법)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회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우편통신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위탁교육: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27조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작 업 장 안 전 관 리

제28조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실행)

-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생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전기설비안전)

-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3.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 1. 대지전압이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중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30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한다)을 제조하는 때에는 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절차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 ③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안전검사)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정격 하중이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리프트
 - 5. 압력용기
 - 6. 곤돌라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 12. 컨베이어(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
 - 13. 산업용 로봇(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산업용 로봇)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32조 (안전검사의 주기)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 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6개월마다)
-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4년마다)

제33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생산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 (작업중지)

-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7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한 경우에 한함)
-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 ① 작업장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④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 (안전보건진단)

-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① 회사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⑤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교통재해예방)

- ① 회사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비상조치계획)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5. 비상시 대피절차
 -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 8. 대피전 주요 고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2조 (피난 및 대응훈련)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3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 5 장 작 업 장 보 건 관 리

제44조 (작업환경측정)

-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 ④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료채취를 마친 날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 ⑧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46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①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서는2년에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1년에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전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가. 배치전 건강진단
 - 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 부서로 지정
-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 (안전보건 보호구)

-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훑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훑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기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근로시간 연장제한)

-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한다.
 - 1. 갯(坑) 내에서 하는 작업
 -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52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 ① 회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5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4조 (근골격계질환예방)

-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②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용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객용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용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컨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7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8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59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7 장 위 험 성 평 가

제60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3조 (위험성평가 주기)

-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4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